



상주시의회 공고 제2018 - 11호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9월 18일

상 주 시 의 회 의 장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지원 사항이 야식비, 피복비, 소모성장비 구입 등에 한정되어 있어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실질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에 따라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원 출동비 지원(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상주시의회의장 [참조 :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상주시 중앙로 111, 상주시의회]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화 : 054-537-7841, FAX : 054-535-9854, 상주시의회 홈페이지 www.sangju.go.kr).

sangjuCounci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의견 내용	비고